

교육공무원 호봉정정처분취소등 청구 소송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0구합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기타
원고	○○○	피고	인천광역시교육감
판결선고일	[1심] 2022. 4. 22. 원고패(교육감승)	비고	
사건개요	<p>○ 원고는 2018. 3. 1. 신규 채용되어 교육공무직 경력을 80%로 인정받고 재직 중인 영양교사임. 피고는 상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* 위반으로 2020. 5. 15. 개정된 「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」에 따라 ‘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을 80%로 인정한 것은 잘못’이므로 이를 50%로 재산정하여 과다 지급된 5년치 보수를 환수 진행 중인바, 원고는 2020. 9. 1. 피고의 호봉정정 처분 및 최근 5년간 과오지급된 보수의 환수처분은 위법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.</p> <p>* 공무원보수규정: 교육공무직 근무 경력 인정 시, 업무 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 경력은 80%, 그 외 경력은 50%를 인정</p> <p>** 개정 전 예규: 교원자격증 취득 유무와 관계없이 80%를 인정</p>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사건 소 중 과오지급 보수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		
판결요약	<p>○ 개정 전 예규 중 이 사건 해당 부분은 상위법령인 구 공무원보수규정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당연 무효임.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 전 예규에 따라 확정된 원고의 호봉을 바로 잡기 위한 피고의 호봉정정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</p> <p>○ 원고가 근무 중인 학교 행정실에서 환수 예정 금액을 계산한 문서를 받은 것은 피고가 이행의 최고 또는 사실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일 뿐,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, 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, 과오지급 보수 환수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</p>		